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의자 : 이진환, 한근수, 이경숙
전혜연, 박경원, 정현미
김지훈(민), 박윤옥

1. 제안 이유

남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 신설 및 관련 규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나. 표창 수여 대상 부문의 명확화(안 제5조)
- 다. 시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취소 규정 신설(안 제14조)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 가. 「지방자치법」
- 나. 「공직선거법」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포상은 의정”을 “포상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장”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패)”를 “(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 및 남양주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제11조 단서 중 “제5조 제3항”을 “제5조제4호”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취소) ① 의장은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패)·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포상대상) <u>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제2조(포상대상) <u>포상은 남양주시 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u> ----- ----- ----- -- <u>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p>
<p>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u>남양주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이 행한다.</p>	<p>제3조(포상권자) ----- <u>의장</u>----- ----- -----.</p>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표창장, 상장, 감사장(패)</u>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서 신설></p>	<p>제4조(포상의 종류) ----- ----- <u>(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u>-. <u>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p> <p>1. (생략)</p> <p>2. <u>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u></p>	<p>제5조(표창장)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회 및 남양주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u></p>

<신 설>

3. (생 략)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이 한다.

② (생 략)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3.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공적심사) -----

-----제5조제4호-----

-----.

제14조(포상 취소) ① 의장은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왕은선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 행위

(이하 생략)